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협력 체계 구축 (안 제4조)
- 피해장애인 보호 (안 제5조)
- 시설 점검 등 (안 제6조)

4.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7,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